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314
----------	------

제안년월일: 2024년 12월 18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남궁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49호)과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6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기후예산제와 탄소중립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한 기후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후결산서 관련 내용 규정(안 제5조제3항).

나. 기후예산서·결산서 작성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다.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제6조제2항, 제7조~제9조).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효과분석”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대효과”를 “효과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후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률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기후예산서·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문·심의)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40명 이내”를 “40명 내외”로 한다.

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생략)</p> <p>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u>효과분석</u></p> <p>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등 <u>기대효과</u></p> <p>5. (생략)</p> <p><u><신설></u></p> <p>③ (생략)</p> <p><u><신설></u></p> <p>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p> <p><u>시장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p>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p> <p>2. <u>기후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u></p> <p>3. <u>기후예산 사업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u></p> <p>4. <u>기후예산제 운영 성과 분석·평가에</u></p>	<p>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온실가스 감축목표</u></p> <p>4. ----- <u>효과분석</u></p> <p>5. (현행과 같음)</p> <p>③ <u>기후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u>기후예산서·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u></p> <p>제6조(자문·심의) <u>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한다.</u></p>

현행	개정안
<p><u>관한 사항</u></p> <p>5. <u>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u> <u>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u> <u>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u> <u>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u> <u>한다.</u></p> <p><u>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u> <u>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u> <u>위촉한다.</u></p> <p>1. <u>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u></p> <p>2. <u>서울특별시의 기후예산제 관련 업무</u> <u>담당 부서의 장</u></p> <p>3. <u>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u> <u>한 사람</u></p> <p>4. <u>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예산 관련 활</u> <u>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5.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u>사람</u></p> <p><u>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u> <u>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u> <u>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u>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u> <u>기간으로 한다.</u></p> <p><u>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u>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 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u></p> <p><u>⑦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u></p> <p><u>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u></p> <p><u>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